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43 발의연월일: 2020. 11. 10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1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(예산 및 결산) ① (생 | 제19조(예산 및 결산) ① (현행과 |
| 략) | 같음) |
|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| ② |
|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, | |
| 재산목록, <u>대차대조표</u> 및 손익 | <u>재무상태표</u> |
| 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| |
|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 | |
|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 <u>.</u> |